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2685
------	------

발의일자 : 2025. 3. 28.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도병두 의원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제38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